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542호

축산물의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6. 11. 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542호

「축산물의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의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의4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축산물, 제출해야 하는 자료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조항 신설(제1조)

축산물에 대한 검사명령 대상 축산물,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검사명령 대상 축산물의 범위 신설(제2조)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2조의4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축산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다. 검사명령 지정절차 마련(제3조)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을 검사대상 축산물의 검사가 가능한 시험·검사기관으로 한정하고, 검사명령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과 검사명령을 알리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 검사명령의 이행절차 마련(제4조)

1)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에 대해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하도록 정함
2)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부득이하게 검사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식약처장은 영업자가 제출한 사유를 검토하여 검사명령 이행기간을 연장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마. 검사명령 부적합 제품에 대한 보고절차(제5조)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명령 대상 축산물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보고 내용에 대해 정함

바. 검사명령의 해제절차 마련 (제6조)

검사명령 대상 축산물에 대해 검사한 결과에 따라 검사명령을 해제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사. 검사명령의 관리절차 마련(제7조)

검사명령을 실시하는 경우 효율적 관리를 위해 검사명령 관리대장을 작성(전산관리 포함)하도록 정함

3. 의견 제출

「축산물의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는 2026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축산물안전정책과, 전화 043-719-3257 팩스 043-719-32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 호

축산물의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의4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축산물의 범위, 제출 자료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명령 대상 축산물)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4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축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의 8) (1) ①에 따라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이 검출되었거나 검출될 우려가 있는 축산물
2.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이 검출되었거나 검출될 우려가 있는 축산물
3. 그 밖에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축산물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이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하는 축산물

제3조(검사명령 절차 등) ① 식약처장은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영업자에게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이하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검사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식약처장이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검사명령을 하는 경우 검사명령 대상 축산물, 대상 영업자, 검사항목, 기간, 시험법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명령서를 해당 영업자에게 송달(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한다.

③ 식약처장은 영업자에게 법 제4조에 따른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법 또는 식약처장이 별도로 정한 시험법에 따라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검사명령 이행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검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
2. 법 제12조의4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

②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 이행기간 이전에 그 사유를 식약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식약처장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행기한을 연장하거나 검사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1. 검사장비 부족 등 시험·검사기관의 사정으로 이행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2. 영업자의 안전성 입증자료 등 준비에 추가 기간이 필요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3. 생산중단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검사명령 대상 축산물이 전량 유통·판매로 인한 재고 소진으로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부적합 제품에 대한 보고) 제3조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은 검사명령 대상 축산물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영업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1. 영업자
2. 제품명
3. 제조일자, 소비기한(품질유지기한 또는 포장일자를 포함한다.)
4. 달걀껍데기 표시사항
5. 부적합 검사항목 및 결과

제6조(검사명령의 해제) ① 식약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명령을 해제할 수 있다.

1. 검사명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300건 이상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검사항목에서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2. 검사명령일로부터 2년간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검사항목에서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식약처장이 검사명령 원인이 해소되는 등 검사명령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식약처장이 제1항에 따라 축산물에 대한 검사명령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명령의 관리 등) 식약처장은 제3조에 따라 검사명령을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명령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식약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일련번호

검 사 명 령 서

검사명령 대상 축산물		
영업자	대표자	
	영업의 종류	
	영업소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소)	(핸드폰)
	Fax 번호	이메일 주소
사유		
기간		
검사항목		
시험법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4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명령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

유의사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의4에 따른 검사명령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10㎜×297㎜[백상지(80g/㎡)]

■ [별지 제2호서식]

검사명령 관리대장

명령 부서	일련 번호	검사명령 대상 세부사항						영업자						사유	기간	검사 항목	시험 법	검사 명령 결과	조치 결과	비고
		제품명 (품목명)	종류	축산물의 유형	소비기한 (또는 제조일자)	제조업체		대표자	영업의 종류	영업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업체명	소재지													

210㎜×297㎜[백상지(80g/㎡)]